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30 |
|----------|-----|

2023년 7월 3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고광민 의원
2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3. 상정일자 :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
(2023년 7월 3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고광민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영·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탓에 등하교 및 야외 활동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잦고 돌발행동도 많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.
-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핀란드, 에스토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·유아 등의 야외 활동 시 형광조끼 및 반사용품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.

- 이에 교육감이 형광조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(안 제10조 제3항)

III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고광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830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장 및 장비 등의 물적 지원체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하고(안 제10조제3항),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는 외부 교육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또는 장

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(안 제10조제4항)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‘교육안전 종합계획’을 수립하고 7대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 금년부터는 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시설물 관리, 체험·학습에 있어서의 안전교육 등에 많은 행·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등하교시 통학로 교통사고와 외부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[표-1]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

(기준: 2023.5.31. 단위: 건)

| 연도 | 등하교 | 외부 교육활동 | | | | | 비고 |
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|
| | | 현장학습 | 수학여행 | 수련원 | 체험활동 | 출전경기 | |
| 2021 | 828 | 48 | 0 | 3 | 8 | 100 | |
| 2022 | 1,290 | 187 | 13 | 17 | 10 | 253 | |
| 2023 | 601 | 64 | 30 | 1 | 19 | 102 | |

-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을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위험에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학교장과 학부모 등에게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안전사고 감소를 꾀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.
-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복장 및 장비만을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용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

합리적이라 할 것인바,

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혔으나(행정관리담당관-8833., 2023.6.8.),

금번 정례회에 동 개정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된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」의 경우 소관 상임위 심사 결과 ‘복장 및 장비를 지급’을 ‘안전용품 지원’으로 수정가결¹⁾된 바 있습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) 의안번호 11-00824,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 처리 결과: 수정가결(2023.6.20.)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학교장 및 학부모는 학생들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0조(안전사고의 예방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제10조(안전사고의 예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 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학교장 및 학부모는 학생들 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|